# 『청룡동 오펠리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 **청룡동 오펠리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견본주택(주택전시관)의 운영과 함께,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www.orphelium.com)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에 대해 당 사는 시간대를 정하여 한정된 인원에 한해 방문 관람을 운영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사전에 방문가능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입장 전, 관람시,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이 37.3도 이상일 경우 - 입장 시 손 소독제, 소독발판, 체온측정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청룡동 오펠리움"**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시 그에 따라 고객 상담을 대표전화(1833-8005)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의 집중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 신청자격 상황등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는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착오 안내 및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유선상의 상담 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감정원의 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 07. 1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07. 13.)**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변경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오니, 청약접수 시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고시」제2019-30호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2019. 07. 13.** 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적용지역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일광면에 한함)](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청약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하여야 함)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반영, 3월 16일 공고분부터 적용)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제한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rphelium.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2019.08.20.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거래당사자는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 : 해당건설지역(부산광역시 사상구)은 「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0.06.05.)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 분 | 특별공급<br>(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
| 일 정 | 7월 23일(목) | 7월 24일(금) | 7월 27일(월) | 7월 31일(금) | 8월 11일(화)<br>~ 8월 13일(목) |
| 방 법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 장 소 | ■ 사업주체 견본주택<br>■ 한국감정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한국감정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한국감정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한국감정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

※ 계약체결기간은 토, 일요일을 제외한 3영업일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과-35876호(2020.07.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45-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114세대 [**특별공급 48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1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1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3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 1층~지상 20층 1개동 (지하1층:주차장,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 지상2층~20층 공동주택)

■ 입주시기 : **2022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일반분양 세대수 |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계 | | |
| 민영 주택 | **2020000831** | 4 | 63.8300A | 63A | 63.8300 | 14.7755 | 78.6055 | 12.0297 | 90.6352 | 14.7416 | 19 | 2 | 2 | 4 | 1 | 9 | 10 | 1 |
| | | 5 | 63.8000B | 63B | 63.8000 | 15.0408 | 78.8408 | 12.0239 | 90.8647 | 14.7347 | 19 | 2 | 2 | 4 | 1 | 9 | 10 | 1 |
| | | 1 | 51.2800C | 51C | 51.2800 | 11.8479 | 63.1279 | 9.6644 | 72.7923 | 11.8432 | 19 | 2 | 2 | 4 | 0 | 8 | 11 | 1 |
| | | 6 | 63.8000D | 63D | 63.8000 | 14.5308 | 78.3308 | 12.0239 | 90.3547 | 14.7347 | 19 | 2 | 2 | 4 | 1 | 9 | 10 | 1 |
| | | 7 | 63.1000E | 63E | 63.1000 | 14.8822 | 77.9822 | 11.8920 | 89.8742 | 14.5730 | 19 | 2 | 2 | 4 | 0 | 8 | 11 | 1 |
| | | 2 | 52.3400F | 52F | 52.3400 | 13.4823 | 65.8223 | 9.8642 | 75.6865 | 12.0880 | 18 | 1 | 1 | 3 | 0 | 5 | 13 | 0 |
| | | 3 | 52.3400G | 52G | 52.3400 | 13.4818 | 65.8218 | 9.8655 | 75.6873 | 12.0886 | 1 | 0 | 0 | 0 | 0 | 0 | 1 | 1 |
| | 합계 | | | | | | | | | | 114 | 11 | 11 | 23 | 3 | 48 | 66 | 6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다음 소수점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주택형 | 공급세대수 | 동호 | 층구간 | 해당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시 |
| | | | | | | | | 계약시 | 15일이내 | 2020.11.15 | 2021.02.15 | 2021.05.15 | 2021.08.15 | 2021.11.15 | 2022.02.15 | |
| 63.8300A | 19 | 1호 | 2층 | 1 | 58,729,833 | 196,770,167 | 255,500,000 | 10,000,000 | 15,550,000 | 25,550,000 | 25,550,000 | 25,550,000 | 25,550,000 | 25,550,000 | 25,550,000 | 76,650,000 |
| | | | 3,4층 | 2 | 58,729,833 | 200,270,167 | 259,000,000 | 10,000,000 | 15,900,000 | 25,900,000 | 25,900,000 | 25,900,000 | 25,900,000 | 25,900,000 | 25,900,000 | 77,700,000 |
| | | | 5~7층 | 3 | 58,729,833 | 209,270,167 | 268,000,000 | 10,000,000 | 16,800,000 | 26,800,000 | 26,800,000 | 26,800,000 | 26,800,000 | 26,800,000 | 26,800,000 | 80,400,000 |
| | | | 8~10층 | 3 | 58,729,833 | 217,270,167 | 276,000,000 | 10,000,000 | 17,600,000 | 27,600,000 | 27,600,000 | 27,600,000 | 27,600,000 | 27,600,000 | 27,600,000 | 82,800,000 |
| | | | 11~13층 | 3 | 58,729,833 | 224,270,167 | 283,000,000 | 10,000,000 | 18,300,000 | 28,300,000 | 28,300,000 | 28,300,000 | 28,300,000 | 28,300,000 | 28,300,000 | 84,900,000 |
| | | | 14~16층 | 3 | 58,729,833 | 230,270,167 | 289,000,000 | 10,000,000 | 18,900,000 | 28,900,000 | 28,900,000 | 28,900,000 | 28,900,000 | 28,900,000 | 28,900,000 | 86,700,000 |
| | | | 17~19층 | 3 | 58,729,833 | 235,270,167 | 294,000,000 | 10,000,000 | 19,400,000 | 29,400,000 | 29,400,000 | 29,400,000 | 29,400,000 | 29,400,000 | 29,400,000 | 88,200,000 |
| | | | 20층 | 1 | 58,729,833 | 239,270,167 | 298,000,000 | 10,000,000 | 1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89,400,000 |
| 63.8000B | 19 | 2호 | 2층 | 1 | 58,702,344 | 197,797,656 | 256,500,000 | 10,000,000 | 15,650,000 | 25,650,000 | 25,650,000 | 25,650,000 | 25,650,000 | 25,650,000 | 25,650,000 | 76,950,000 |
| | | | 3,4층 | 2 | 58,702,344 | 201,297,656 | 260,000,000 | 10,000,000 | 16,000,000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26,000,000 | 78,000,000 |
| | | | 5~7층 | 3 | 58,702,344 | 210,297,656 | 269,000,000 | 10,000,000 | 16,900,000 | 26,900,000 | 26,900,000 | 26,900,000 | 26,900,000 | 26,900,000 | 26,900,000 | 80,700,000 |
| | | | 8~10층 | 3 | 58,702,344 | 218,297,656 | 277,000,000 | 10,000,000 | 1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83,100,000 |
| | | | 11~13층 | 3 | 58,702,344 | 225,297,656 | 284,000,000 | 10,000,000 | 18,400,000 | 28,400,000 | 28,400,000 | 28,400,000 | 28,400,000 | 28,400,000 | 28,400,000 | 85,200,000 |
| | | | 14~16층 | 3 | 58,702,344 | 231,297,656 | 290,000,000 | 10,000,000 | 19,000,000 | 29,000,000 | 29,000,000 | 29,000,000 | 29,000,000 | 29,000,000 | 29,000,000 | 87,000,000 |
| | | | 17~19층 | 3 | 58,702,344 | 236,297,656 | 295,000,000 | 10,000,000 | 19,500,000 | 29,500,000 | 29,500,000 | 29,500,000 | 29,500,000 | 29,500,000 | 29,500,000 | 88,500,000 |
| | | | 20층 | 1 | 58,702,344 | 240,297,656 | 299,000,000 | 10,000,000 | 1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89,700,000 |
| 51.2800C | 19 | 3호 | 2층 | 1 | 47,182,745 | 159,317,255 | 206,500,000 | 10,000,000 | 10,650,000 | 20,650,000 | 20,650,000 | 20,650,000 | 20,650,000 | 20,650,000 | 20,650,000 | 61,950,000 |
| | | | 3,4층 | 2 | 47,182,745 | 164,817,255 | 212,000,000 | 10,000,000 | 11,200,000 | 21,200,000 | 21,200,000 | 21,200,000 | 21,200,000 | 21,200,000 | 21,200,000 | 63,600,000 |
| | | | 5~7층 | 3 | 47,182,745 | 173,817,255 | 221,000,000 | 10,000,000 | 12,100,000 | 22,100,000 | 22,100,000 | 22,100,000 | 22,100,000 | 22,100,000 | 22,100,000 | 66,300,000 |
| | | | 8~10층 | 3 | 47,182,745 | 181,817,255 | 229,000,000 | 10,000,000 | 12,900,000 | 22,900,000 | 22,900,000 | 22,900,000 | 22,900,000 | 22,900,000 | 22,900,000 | 68,700,000 |
| | | | 11~13층 | 3 | 47,182,745 | 188,817,255 | 236,000,000 | 10,000,000 | 13,600,000 | 23,600,000 | 23,600,000 | 23,600,000 | 23,600,000 | 23,600,000 | 23,600,000 | 70,800,000 |
| | | | 14~16층 | 3 | 47,182,745 | 194,817,255 | 242,000,000 | 10,000,000 | 14,200,000 | 24,200,000 | 24,200,000 | 24,200,000 | 24,200,000 | 24,200,000 | 24,200,000 | 72,600,000 |
| | | | 17~19층 | 3 | 47,182,745 | 199,817,255 | 247,000,000 | 10,000,000 | 14,700,000 | 24,700,000 | 24,700,000 | 24,700,000 | 24,700,000 | 24,700,000 | 24,700,000 | 74,100,000 |
| | | | 20층 | 1 | 47,182,745 | 203,817,255 | 251,000,000 | 10,000,000 | 15,100,000 | 25,100,000 | 25,100,000 | 25,100,000 | 25,100,000 | 25,100,000 | 25,100,000 | 75,300,000 |
| 63.8000D | 19 | 4호 | 2층 | 1 | 58,702,344 | 200,797,656 | 259,500,000 | 10,000,000 | 15,950,000 | 25,950,000 | 25,950,000 | 25,950,000 | 25,950,000 | 25,950,000 | 25,950,000 | 77,850,000 |
| | | | 3,4층 | 2 | 58,702,344 | 204,797,656 | 263,500,000 | 10,000,000 | 16,350,000 | 26,350,000 | 26,350,000 | 26,350,000 | 26,350,000 | 26,350,000 | 26,350,000 | 79,050,000 |
| | | | 5~7층 | 3 | 58,702,344 | 213,797,656 | 272,500,000 | 10,000,000 | 17,250,000 | 27,250,000 | 27,250,000 | 27,250,000 | 27,250,000 | 27,250,000 | 27,250,000 | 81,750,000 |
| | | | 8~10층 | 3 | 58,702,344 | 221,797,656 | 280,500,000 | 10,000,000 | 18,050,000 | 28,050,000 | 28,050,000 | 28,050,000 | 28,050,000 | 28,050,000 | 28,050,000 | 84,150,000 |
| | | | 11~13층 | 3 | 58,702,344 | 228,797,656 | 287,500,000 | 10,000,000 | 18,750,000 | 28,750,000 | 28,750,000 | 28,750,000 | 28,750,000 | 28,750,000 | 28,750,000 | 86,250,000 |
| | | | 14~16층 | 3 | 58,702,344 | 234,797,656 | 293,500,000 | 10,000,000 | 19,350,000 | 29,350,000 | 29,350,000 | 29,350,000 | 29,350,000 | 29,350,000 | 29,350,000 | 88,050,000 |
| | | | 17~19층 | 3 | 58,702,344 | 239,797,656 | 298,500,000 | 10,000,000 | 19,850,000 | 29,850,000 | 29,850,000 | 29,850,000 | 29,850,000 | 29,850,000 | 29,850,000 | 89,550,000 |
| | | | 20층 | 1 | 58,702,344 | 243,797,656 | 302,500,000 | 10,000,000 | 20,250,000 | 30,250,000 | 30,250,000 | 30,250,000 | 30,250,000 | 30,250,000 | 30,250,000 | 90,750,000 |
| 63.1000E | 19 | 5호 | 2층 | 1 | 58,058,139 | 201,441,861 | 259,500,000 | 10,000,000 | 15,950,000 | 25,950,000 | 25,950,000 | 25,950,000 | 25,950,000 | 25,950,000 | 25,950,000 | 77,850,000 |
| | | | 3,4층 | 2 | 58,058,139 | 204,941,861 | 263,000,000 | 10,000,000 | 16,300,000 | 26,300,000 | 26,300,000 | 26,300,000 | 26,300,000 | 26,300,000 | 26,300,000 | 78,900,000 |
| | | | 5~7층 | 3 | 58,058,139 | 213,941,861 | 272,000,000 | 10,000,000 | 17,200,000 | 27,200,000 | 27,200,000 | 27,200,000 | 27,200,000 | 27,200,000 | 27,200,000 | 81,600,000 |
| | | | 8~10층 | 3 | 58,058,139 | 221,941,861 | 280,000,000 | 10,000,000 | 18,000,000 | 28,000,000 | 28,000,000 | 28,000,000 | 28,000,000 | 28,000,000 | 28,000,000 | 84,000,000 |
| | | | 11~13층 | 3 | 58,058,139 | 228,941,861 | 287,000,000 | 10,000,000 | 18,700,000 | 28,700,000 | 28,700,000 | 28,700,000 | 28,700,000 | 28,700,000 | 28,700,000 | 86,100,000 |
| | | | 14~16층 | 3 | 58,058,139 | 234,941,861 | 293,000,000 | 10,000,000 | 19,300,000 | 29,300,000 | 29,300,000 | 29,300,000 | 29,300,000 | 29,300,000 | 29,300,000 | 87,900,000 |
| | | | 17~19층 | 3 | 58,058,139 | 239,941,861 | 298,000,000 | 10,000,000 | 1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89,400,000 |
| | | | 20층 | 1 | 58,058,139 | 243,941,861 | 302,000,000 | 10,000,000 | 20,200,000 | 30,200,000 | 30,200,000 | 30,200,000 | 30,200,000 | 30,200,000 | 30,200,000 | 90,600,000 |
| 52.3400F | 18 | 6호 | 3,4층 | 2 | 48,158,017 | 166,841,983 | 215,000,000 | 10,000,000 | 11,500,000 | 21,500,000 | 21,500,000 | 21,500,000 | 21,500,000 | 21,500,000 | 21,500,000 | 64,500,000 |
| | | | 5~7층 | 3 | 48,158,017 | 175,841,983 | 224,000,000 | 10,000,000 | 12,400,000 | 22,400,000 | 22,400,000 | 22,400,000 | 22,400,000 | 22,400,000 | 22,400,000 | 67,200,000 |
| | | | 8~10층 | 3 | 48,158,017 | 183,841,983 | 232,000,000 | 10,000,000 | 13,200,000 | 23,200,000 | 23,200,000 | 23,200,000 | 23,200,000 | 23,200,000 | 23,200,000 | 69,600,000 |
| | | | 11~13층 | 3 | 48,158,017 | 190,841,983 | 239,000,000 | 10,000,000 | 13,900,000 | 23,900,000 | 23,900,000 | 23,900,000 | 23,900,000 | 23,900,000 | 23,900,000 | 71,700,000 |
| | | | 14~16층 | 3 | 48,158,017 | 196,841,983 | 245,000,000 | 10,000,000 | 14,500,000 | 24,500,000 | 24,500,000 | 24,500,000 | 24,500,000 | 24,500,000 | 24,500,000 | 73,500,000 |
| | | | 17~19층 | 3 | 48,158,017 | 201,841,983 | 250,000,000 | 10,000,000 | 15,000,000 | 25,000,000 | 25,000,000 | 25,000,000 | 25,000,000 | 25,000,000 | 25,000,000 | 75,000,000 |
| | | | 20층 | 1 | 48,158,017 | 205,841,983 | 254,000,000 | 10,000,000 | 15,400,000 | 25,400,000 | 25,400,000 | 25,400,000 | 25,400,000 | 25,400,000 | 25,400,000 | 76,200,000 |
| 52.3400G | 1 | 6호 | 2층 | 1 | 48,160,407 | 161,339,593 | 209,500,000 | 10,000,000 | 10,950,000 | 20,950,000 | 20,950,000 | 20,950,000 | 20,950,000 | 20,950,000 | 20,950,000 | 62,850,000 |

■ **주택형 표시 안내**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63.8300A** | **63.8000B** | **51.2800C** | **63.8000D** | **63.1000E** | **52.3400F** | **52.3400G** |
|---|---|---|---|---|---|---|---|
| 견본주택등 약식표기 | **63A** | **63B** | **51C** | **63D** | **63E** | **52F** | **52G** |

■ **공통유의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공사금액, 추가선택품목(유상)은 미포함되어 있으며, 추가선택품목은 추 후 계약자가 선택하여 별도 계약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최하층 주택배정 세대는 1층에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등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지정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해당 층의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 | | | 63A | 63B | 51C | 63D | 63E | 52F | 52G | 합계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 1 | 1 | 1 | 1 | 1 | 0 | 0 | 5 |
| | 장애인 | | 1 | 1 | 1 | 1 | 1 | 1 | 0 | 6 |
| | 중소기업 근로자 | | 0 | 0 | 0 | 0 | 0 | 0 | 0 | 0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0 | 0 | 0 | 0 | 0 | 0 | 0 | 0 |
|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 0 | 0 | 0 | 0 | 0 | 0 | 0 | 0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2 | 2 | 2 | 2 | 2 | 1 | 0 | 11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 우선공급(75%) | 3 | 3 | 3 | 3 | 3 | 3 | 0 | 18 |
| | | 일반공급(25%) | 1 | 1 | 1 | 1 | 1 | 0 | 0 | 5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1 | 1 | 0 | 1 | 0 | 0 | 0 | 3 |
| 합 계 | | | 9 | 9 | 8 | 9 | 8 | 5 | 0 | 48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 | 내용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br>※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br>-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br>-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br>※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br>가. 주택공급신청자<br>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br>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br>-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11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지청 복지과

■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11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br>**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23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자)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자)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 구분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5,554,983원 | 6,226,342원 | 6,938,354원 | 7,594,083원 | 8,249,812원 | 8,905,541원 |
|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6,665,980원 | 7,471,610원 | 8,326,025원 | 9,112,900원 | 9,899,774원 | 10,686,649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20%이하 | 5,554,984원 ~ 6,665,980원 | 6,226,343원 ~ 7,471,610원 | 6,938,355원 ~ 8,326,025원 | 7,594,084원 ~ 9,112,900원 | 8,249,813원 ~ 9,899,774원 | 8,905,542원 ~ 10,686,649원 |
|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30%이하 | 6,665,981원 ~ 7,221,478원 | 7,471,611원 ~ 8,094,245원 | 8,326,026원 ~ 9,019,860원 | 9,112,901원 ~ 9,872,308원 | 9,899,775원 ~ 10,724,756원 | 10,686,650원 ~ 11,577,203원 |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3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자)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 주택 | 1순위 |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br>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br>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입주자저축 면적별 예치금액

| 구 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2순위 대상자

- 1순위 대상자(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2순위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①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20.07.23.(목)<br>(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br>(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br>• 견본주택 방문접수<br>-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함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일반공급 | 1순위 | 2020.07.24.(금) 08: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 2순위 | 2020.07.27.(월) 08:00~17:30 |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br>**[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br><br>**[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br><br>**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br>•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br><br>**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br>•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 구비사항 |
|---|---|---|
| 일반<br>공급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br>·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br>※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br>-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br>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br>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외국인 직계존속<br>-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br>※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br>-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br>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br>(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br>■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br>■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br>※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br>■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br>■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br>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br>(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외 세대원이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에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소유 시 부양가족수 미포함하여 산정함.(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제출 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3.)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서류 [일반공급포함] | O | |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O |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 수집 안내(신청자용) |
| | O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O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으로 제출 |
| | O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불가),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 | O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br>만30세 이전의 혼인하여 혼인 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발급 |
| | O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사유 및 변동일,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 | |
|---|---|---|---|---|---|
| | | | | |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O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br>※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부양가족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br>*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br>[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br>*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br>*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일반(기관추천)<br>특별공급 | O | | 해당기관의 추천서 | | 기관추천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명단으로 대체 |
| 다자녀 특별공급 | O |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배점기준표 작성 (인터넷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br>(임신증명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임신사실확인이가능해야함) |
|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임신중인 경우 |
| | | O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가 입양인 경우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O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 O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 O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소득증빙 서류 참조)<br>(또한,배우자분리세대는분리된배우자및동일한주민등록표상의만19세이상세대원전원의소득입증서류포함) |
|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이외 불가) 제출<br>(임신증명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임신사실확인이가능해야함)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가 입양인 경우 |
|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임신중인 경우 |
|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노부모부양<br>특별공급 | O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산정기준표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가점산정기준표 작성 |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발급(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br>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자녀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세대주이어야 함)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

| | | | | | |
|---|---|---|---|---|---|
| | | | | | 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여부가확인되지않는경우(3년이상의주소변동사항을포함하여발급)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 | O | | 인감증명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O | | 인감도장 | 본인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O | | 위임장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O | |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 O | | 대리인의 인장 | 대리인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07. 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 중 당첨자에 한하여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br>- 세무서 |
| | 신규취업자 |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br>(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br>-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br>-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br>-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무직자 | |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 접수장소 |

※ '재직증명서'는 사본도 가능하나 사업자의 직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인날인(해당직장/세무서)이 되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실 경우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사업자 확인 각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만19세 이상의 세대원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재 무직자일 경우에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 | |
|---|---|
| |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br>•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br>•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br>•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br>-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br>-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br>*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br>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br>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br>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br>•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 거주신청자가 ○○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br>•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br>•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br>•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br>-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br>***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br>-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br>•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br>•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br>•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br>•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br>•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br>•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br>•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br>•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br>•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 일시: 2020. 07. 31(금)<br>• 확인방법<br>-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br>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b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br>- 2020. 08. 11.(화)~2020. 08. 13.(목) (10:00~16:00)<br>- 토,일요일은 제외<br>• 장소<br>- 견본주택<br>(장소 :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248-13번지 2층) |
| 일반공급 | 1순위 | | |
| | 2순위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0. 07. 31.(금) ~ 2020. 08. 09.(일) (10일간)** |
| 인터넷 |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br>-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br>※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0. 07. 31.(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당첨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예비당첨자 선정에 따른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세대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세대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세대를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세대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기간 등이 적용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됨.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제출기간 | 제출 대상 | 제출장소 | 유의사항 |
|---|---|---|---|
| **2020. 08. 04.(화)~2020. 08. 07.(금)<br>(4일간, 11: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br>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 **당사 견본주택<br>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79, 2층(구서동 248-13번지)<br>/ 1833-8005**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br>발행분에 한함**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함.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③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07. 13.)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기본서류 | O |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 |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
| | O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br>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O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 |
| | O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br>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O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O | 무주택소명자료 | -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초본(가옥대장등본 포함), 주택공시가격확인원 등<br>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br>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br>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구비서류"에 따른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서류로 대체함. ※ 공통기본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추가 제출 불필요 | | | | |
| 일반공급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br>※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전입일 및 거주기간 확인이 가능할경우 경우 생략가능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본인주민등록표등본으로전입일및거주기간확인이가능할경우생략가능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자녀 |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본인주민등록표등본으로전입일및거주기간확인이가능할경우생략가능 |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br>※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 | | O |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공급받으려는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 | O | | 인감증명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O | | 인감도장 | 본인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O | | 위임장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 | | |
|---|---|---|---|---|---|
| | O | |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O | | 대리인의 인장 | 대리인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07. 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구 분 | 계약 기간 | 계약 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0. 08. 11.(화)~2020. 08. 13.(목) (10:00~16:00)** | **청룡동 오펠리움 견본주택 (주소 :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248-13번지 2층)**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함. (부적격 당첨자는 임의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당첨효력이 상실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는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경남은행** | **207-0104-4233-07** | **코리아신탁(주)** |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일에 상기 지정 분양대금관리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분양대금 계약금은 상기 계약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 현금 수납 불가)

※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호수 3~4자리+계약자명 → 예시: 201호 홍길동 → '201홍길동'으로 입금)**

**■ 계약관련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당첨이 제한됨)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금은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부담(납부)하며 (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함.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받는 것에 동의하며,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 계약자 개인 신용 등 사유로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의 무이자조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금 납부 회차에 맞추어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에 할 수 없음.
- 계약자 개인 신용 등 사유로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중도금 납부 회차에 맞추어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사업주체 등에게 계약자가 직접 납부함에 따른 금융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됩니다.)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연체 이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등의 사유로 인한 분양계약의 해지 발생 시, 이는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의 중도금대출 협약에 의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 금융기관 및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계약금 1차, 2차)를 완납한 후에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음.
- 본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대출금 전액상환 또는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함.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 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월 : 2022년 05월**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 후 별도 통보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가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의 발생 시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일정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하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은 시공사의 내부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되며, 공급계약서 상의 하자관련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본 아파트의 단지 관리운영을 위해 선숙관리비가 부과되게 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의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안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 계약시 | 입주시 |
| 63.8300A | 11,900,000 | 1,190,000 | 10,710,000 |
| 63.8000B | 11,900,000 | 1,190,000 | 10,710,000 |
| 51.2800C | 9,500,000 | 950,000 | 8,550,000 |
| 63.8000D | 11,850,000 | 1,185,000 | 10,665,000 |
| 63.1000E | 11,800,000 | 1,180,000 | 10,620,000 |
| 52.3400F | 10,000,000 | 1,000,000 | 9,000,000 |
| 52.3400G | 10,000,000 | 1,000,000 | 9,000,000 |

※ 타입별 확장 선택형 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 확장 분양가 등 해당내용을 반드시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www.orphelium.com)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발코니확장금액이 아파트 분양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므로 반드시 계약하여야 하는 필수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경남은행** | **207-0104-4233-07** | **코리아신탁(주)** |

※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호수 3~4자리+계약자명 → 예시: 201호 홍길동 → '201홍길동'으로 입금)**
※ 상기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공사비는 인정되지 않음.
※ 계약금 납부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에 이자는 없음.

■ **발코니 확장관련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본 아파트의 확장형 설계 등으로 필수선택이므로 미 선택이 가능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기본 제공 옵션인 안방과 거실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으로 인한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제품 포함)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 및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 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중 일부는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시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계약 등의 일정은 추 후 수분양자에게 별도 공지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본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금액의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 | 적용타입 | 설치형 | 판매가격 | 비고 |
|---|---|---|---|---|
| 현관 중문 | **51C** | 3연동 | **800,000** | 세대별 택1 |
| | **63A, 63B, 63D, 63E, 52F, 52G** | 스윙도어 | **950,000** | |

**■ 추가선택품목 금액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경남은행** | **207-0104-4233-07** | **코리아신탁(주)** |

※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호수 3~4자리+계약자명 → 예시: 201호 홍길동 → '201홍길동'으로 입금)**
※ 상기 추가선택품목(중문) 금액의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 계약금 납부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에 이자는 없음.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발코니확장 계약의 체결 시 안방 1기와 거실 1기의 천장형 시스템에이컨이 기본 설치 품목으로 제공됩니다.**
- **기본 설치 품목의 안방 1기 및 거실 1기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환금, 환불, 교환, 설치위치의 변경, 제품의 변경 등이 불가하며, 미 설치 요구 시 해당 세대의 천장의 마감은 설치를 위한 상태로 인도됩니다.**
- 설치되는 에어컨의 실외기에는 설치된 제품 이외의 별도의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등기구의 위치를 고려하여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1대, 2대, 3대, 4대)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계약서에 명기된 설치위치를 필히 확인바랍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 및 설치되는 에어컨의 갯수에 따라 필요한 용량의 실외기 제품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실외기의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본 설치 품목 또는 선택 품목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음.
- 선택 혹은 기본 설치되는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는 변경 또는 일부제외가 불가 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발코니에 위치한 실외기실은 천장마감이 되지 않으며, 실외기실 위치에 따라 천장형 냉매배관이 발코니 천장에 노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선택 혹은 기본 설치되는 에어컨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본 설치 및 선택한 에어컨 및 추가선택품목 등의 기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 제공(거실, 안방)되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가 미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품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는 장비사양 및 위치와 무관하오니 계약 체결 시 실제 설치위치 및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별도 계약 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의 착수 이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옵션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별도 계약품목의 계약이 불가함. (단, 계약 체결 가능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상기 유상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 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별도 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사업주체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품목 상세

| 구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품목 |
|---|---|---|
| 바닥재 | [강마루]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안방, 침실, 드레스룸<br>[타일,인조석] 현관<br>[타일 또는 에폭시] 발코니, 대피공간바닥, 실외기실바닥, 발코니바닥 배수구 | 바닥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
| 벽,천장 |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 면처리<br>천장 : 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
|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욕실등 포함) |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매입 등기구 |
| 욕실 | 타일(바닥, 벽), 천정, 젠다이(인조석), 재료분리대,<br>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구, 바닥난방,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 방수(바닥,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배선 |
| |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 |
| 주방가구 | 상,하부장, 판넬, 가구도어(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씽크볼, 시스템선반, 가스쿡탑, 렌지후드 | 설비배관, 전기, 통신 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
| 가구 및 기타사항 | 신발장, 드레스룸, 화장대,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세탁실, 발코니수전 | 월패드,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일괄제어스위치 |
| 창호 | 문틀, 문짝, 도어락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디지털도어록 |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방화문, 하향식 피난구(적용세대에 한함)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람.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 ·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 · 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외 의 품목에 대해서는 시공 및 하자보수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 · 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 내부창호)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시공은 가능하나 타 자재(대리석 등 두께가 상이한 자재)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시행자 시공분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인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가스쿡탑은 가스관련 규정 개정으로 과열방지장치 부착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시설물(자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공사(렌지후드 등)는 사업주체가 원하는 시기까지 완료 되어야 하며, 미설치로 인한 미준공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시설물(스프링쿨러,감지기 등)은 소방관련법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하며 위법사항으로 인한 미준공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 · 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
- 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으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됨.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타입) | 63A | 63B | 51C | 63D | 63E | 52F | 52G |
|---|---|---|---|---|---|---|---|
| 금액 | 19,360,000 | 19,418,000 | 15,832,000 | 19,292,000 | 19,207,000 | 16,508,000 | 16,508,000 |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Ⅶ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일반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2009.4.1「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청약군) 및 타입(약식표기)이나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와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등)과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사업 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도로여건 및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과 주변 혐오시설 유무,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및 대수, 속도, 디자인,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 세대 내부 옵션 관련 사항은 분양계약 시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견본주택에는 **63B, 51C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다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정산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증감면적이 총 계약면적의 2%미만인 때에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함.)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단지내 모든 공용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은 입주민이 공동 사용합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아파트 계약면적 외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급 당시의 용도시설별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대지를 세대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 결과 또는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관련 및 홍보물 등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 내부에 한합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는 세대를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기타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 마감재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분양가 포함 품복관 전시품, 옵션(유상)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타입별 기본 제공품복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선택 시 제외품복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태 **건립 주택형(63B,51C)과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63A,63D,63E,52F,52G)**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 등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 내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본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관람을 위한 냉·난방으로 설치됩니다.
- 본 스프링클러, 소방 감지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소방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CCTV는 보안용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다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다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의 기준이 되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주택형에 따라 마감자재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기준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카다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하드웨어 등), 열림(개폐)방향, 형태, 제조사 등이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세대 시공과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설비시설물 및 배관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미 설치된 **설비시설물(선홈통, 바닥 배수구, 환기구)** 등은 본 공사 시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 및 공용부 타일 마감은 타일 물성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휨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및 기타 유의사항 [계약자는 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계약 이후 아래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높이 : 지하주차장의 층고는 실유효높이 2.3m로 계획되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법개정(2019.01.16.) 전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장임.)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기능/성능/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옥상 구조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단지내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한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 또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공용홀, 복도, 근린생활시설, 조경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발전기 운전 시에 따른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및 주차타워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건축심의 및 인허가 조건 내용 이행 또는 조건 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출입구의 크기 및 진입방법은 동평면의 형상 및 배치에 따라 동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위치·재질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주차장 출입구, 경비실,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측량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사용하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기계식주차장이 있음을 인지합니다.
- 단지 내 식재, 조경시설, 포장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현장 여건, 인허가 내용에 따라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출입구,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옥상녹화, 옥외시설물, 자전거보관소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선형변경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카다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 및 인접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와 높이 차이가 있으며, 주변 도로 및 인접대지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 및 옹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조경시설,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준층 엘리베이터 홀은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춘 시설이 설치됩니다.
-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사양은 각동의 층수에 따라 인승 및 속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의 위치, 개소 및 발코니 단차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다용도실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욕실을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의 유효크기는 관련규정 및 법규에 따라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진행을 위하여 최종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재질,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있으며, 화재 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 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관련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부분은 발코니 마감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경, 비틀림 등이 발생합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는 창호형 자연환기설비가 적용됩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마감재는 실시공시 자재수급 여건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일부 공간은 A/S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필로티,옥상조경, D/A(설비 환기구), 자전거보관소, 상가, 관리동, 주차램프 등의 설치로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기계/전기실 D/A, 주차장 D/A, 부대시설 및 근생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특히,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동으로 유입될 수 있으니 카다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에 게시되어 있는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 확인 후 청약,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D.A의 크기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탑상형 구조로 계획된 단지로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 보관소 및 음식물 쓰레기함은 1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세대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철근의 배근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의 실제 공급면적(주거공용면적, 계단실면적 등), 계약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대지지분 및 전용률 등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범을 위한 CCTV는 지하주차장, 공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등에 설치되며 세대 기준층 복도 등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수량 및 사양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동체감지기는 최하 2개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본 아파트는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구조기준(KBC2016)에 준해 내진설계를 실시하여 내진능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은 “최대유효지반가속도 0.207g”,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7등급”입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

## Ⅷ 기타 주요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구 분 | 적 용 여 부 | 구 분 |
|---|---|---|
| 고효율 기자재 | 적용 |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라 설치 |
| 대기전력 차단장치 | 적용 |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라 설치 |
| 일괄소등 스위치 | 적용 |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라 설치 |
| 고효율조명기구 | 적용 |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라 설치 |
|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용 | 거실/침실 |
| 절수설비 | 적용 | 수전(주방용/세면대/샤워),대변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 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차장 차로 : 1개 차로**
- 출입구의 높이 : 2.30m

**■ 분양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분양보증 내용**

| 보증기간 | 보증금액 | 보증서 번호 |
|---|---|---|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일금이백일십일억칠천구백이십만원정(₩21,179,200,000)** | **제01292020-104-0002900호** |

**■ 분양보증증약관 중 주요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

■ 관리형토지신탁
-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희진개발
주식회사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희진개발 주식회사임을 "을"(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은 위탁자 희진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희진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을"(매수인)은 코리아신탁(주)에게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손해 및 비용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을"(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희진개발 주식회사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을"은 일체 이의 없이 동의한다.
-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에 따라, "을"(매수인)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을 상대로 일체 하자보수(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위탁자 희진개발 주식회사 또는 시공사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 "을"은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위탁자 희진개발 주식회사 또는 매수인 "을"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코리아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희진개발 주식회사와 매수인("을")간에 또는 시공사 주식회사 신태양건설과 매수인("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적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 구분 | 감리회사명 | 감리금액 | 비고 |
|---|---|---|---|
| 건축 / 토목 | (주) 루원 건축사 사무소 | 일금 일억팔천육백십팔만원 정 (₩186,180,000) | |
| 구조 | 루원 정구조 | 일금 일천만원 정(₩10,000,000) | |
| 소방/전기/통신/설비 | (주) 현대 이엔지 | 일금 이천구백만원 정 (₩29,000,000) |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 사업주체(시행사 | 코리아신탁(주) | 110111-2937831 | 215-86-520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
| 시공사 | ㈜신태양건설 | 180111-0184662 | 621-81-18854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1001호(거제동, 로제스티빌딩) |
| 위탁사 | 희진개발(주) | 180111-1266443 | 436-81-01677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냇길 80(청룡동) |

**■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248-13번지 2층**
**■ 분양문의 : ☎ 1833-8005**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orphelium.com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 견본주택 분양사무소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중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공급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를 우선으로 합니다.